

가상자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 양 조합 홈페이지 게시용 -

2021-05-12

홈페이지 팝업 문구(안)

가상자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최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ium) 등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명칭과 방식의 가상자산들이 난립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판매 사기를 행하거나, 가상자산 판매·채굴사업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 배당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특히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허위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유관기관 주요 단속사례, 대처법 등)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리조합 신고포상제에도 관련 불법 다단계업체를 적극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상자산 관련 피해사례([바로가기 클릭](#))

가상자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최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ium) 등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다양한 명칭과 방식의 가상자산들이 난립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판매 사기를 행하거나, 가상자산 판매·채굴사업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 배당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그 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이익을 빌미로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금융위 등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회의 보도자료(21.4.16.)

-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①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가상자산은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②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특히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허위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요 사례

가상자산 사기 주요 사례

- ① 시중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해 준다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18.3.29.)
- ② 실체가 없는 외국 회사 발행의 코인을 원금 및 고수익 보장으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18.6.7.)
- ③ 가상화폐의 출처를 허위 홍보하고 통용가능성 없고 환전도 어려워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화폐임에도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판매('19.12.16.)
- ④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는 다수의 가상화폐를 제작한 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본인들 운영의 거래소에 상장시켜 가격 펌핑 후 상장폐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20.6.19.)
- ⑤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판매 ('20.10.28.)

* 검찰청 보도자료 참조

□ 공제조합 신고포상제 접수제보 사례

① 한국지사로 홍보, 3개월 내 10배 이상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 ○○업체는 한국지사(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라고 홍보하며 **e-coin(전자화폐)**에 130만원 투자 시 3개월 내에 1,430만원 배당, 1,300만원 투자 시 3개월 내에 1억 9,500만원 배당 등 10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모집

② 투자금 만큼 코인지급, 연간 120% 수익보장 미끼 투자자 모집

- ○○업체는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 1,000만원의 투자금을 내면 1,000만원 어치의 **코인을 지급**하고, 6개월간 코인 보유 시 배당으로 600만원 어치의 코인을 지급하며(연간 수익율 120%), 보유한 코인은 코인국제거래소에서 즉시 환전할 수 있다고 하며 투자자 모집

③ 해외본사 홍보, 30만원 투자 후 하위 회원모집시 고수익 보장

- ○○업체는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여행상품과 **비트코인**, 디지털제품 패키지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업체라고 홍보, 본인이 30만원 투자 후 3명 추천하는 구조로 10단계에 도달하면 매달 상당금액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며 회원가입 유도

* 상기 3건 모두 경찰 수사의뢰 완료('17.11.30.)

□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의 특징

* 경찰청 보도자료 참조('17.7.12.)

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

②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③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

□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및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 ※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된 다단계판매 회사인지 여부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
- 금융감독원 포털시스템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 공제조합 신고포상제 안내

-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 개요
 -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공제조합 신고포상제에 제보 시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 실시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포상금 (건당50~200만원)을 지급

☞ 신고처

- ① 직접판매공제조합 : 080-860-1202 (www.macco.or.kr),
특수판매공제조합 : 02-2058-0831 (www.kossa.or.kr)
- ② 공정거래위원회 : 1677-0007 (www.ftc.go.kr)

※ 제보방법, 유의사항, 포상절차 등 Q&A 상세내용 참조

(끝).